



# 수원당수지구 A5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내 A5블록

■ **공급대상** : A5블록 726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84세대 [전용면적 46㎡ 92세대, 55㎡ 392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금용권의 중도금 집산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중도금 집산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 려 드 립 니 다

■ **중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4.11.14.)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이후 중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며,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수원당수지구 A5블록 726세대 중 484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42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A5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15.(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16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반드시 주택형(046.00000, 055.00000)으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가입해야 하므로, 주택 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융선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

■ 주택전시관 관람안내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4.11.15.(금) 10:00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수원당수 A5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4.11.15.(금) ~ 11.16(토) (10:00 ~ 17:00) 양일간 선공개 합니다.

-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단위세대 46A타입, 55A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타입은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대상	구분	방문일정	주소	기타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당첨자 관람기간 (일반관람 불가)	'24.11.15.(금) ~ 11.16(토) (10:00 ~ 17: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관람 및 상담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31-250-8181
일반개방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일반관람	'24.11.17.(일) ~ 11.24(일) (10:00 ~ 17:00)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sd.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공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수원시 1년 이상(2023.11.15.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수원시 1년 미만(2023.11.16.이후)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공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23.11.15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2) '23.11.15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개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공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공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지속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계약체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전자	현장
'24.11.15(금)	'24.11.25(월) 10:00 ~ 11.26(화) 17:00	'24.11.27(수) 10:00 ~ 11.28(목) 17:00	'24.12.10(화) 14:00 이후	'24.12.17(화)~22(일) (10:00~16:00)	'25.4.3(목) 10:00 ~4.4(금) 16:00	'25.4.8(화)~4.9(수) (10:00~16:00)	'25.4.10(목)~4.11(금)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접수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5.04.08.(화)~04.09(수)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에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외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부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자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임)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금융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금융(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담보인정비율 70%			담보인정비율 6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5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4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금융 용자액(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금융 용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 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안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해당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제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제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제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제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제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제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제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제당첨 제한
- \* 제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제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자산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규모

■ 수원당수지구 A5블록 726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20층 1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484세대

###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합계	공회공급 공공분양					차후공급 장기임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합 계									726	245	239	242	20	24	'27.06	
A5	046.00000	46A	확장	46.9000	19.6715	7.8075	36.8692	111.2482	35.9468	137	34	58	45	17		5
		46B	확장	46.7500	19.8751	7.7825	36.7513	111.1589	35.9606		20	-				
	055.00000	55A	확장	55.8700	23.1589	9.3008	43.9208	132.2505	42.6891	589	211	181	197	20		7
		55B	확장	55.9100	22.7113	9.3075	43.9522	131.8810	42.4953					19		5
		55C	확장	55.9500	23.0437	9.3141	43.9836	132.2914	42.6785					15		2
		55D	확장	55.7500	23.7517	9.2808	43.8264	132.6089	42.9079					16		5

- \*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마감 후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주택형태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태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태(046.00000, 055.00000)**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세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태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지하주차장 슬래브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5%	중도금 2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보증)
					계약시	(‘26.11.27)		
046.00000	46A	1층	기본형	326,480	16,324	65,296	189,860	55,000
			마이너스옵션	303,702	15,185	60,740	172,777	55,000
		2층	기본형	329,950	16,498	65,990	192,462	55,000
			마이너스옵션	307,172	15,359	61,434	175,379	55,000
		3층	기본형	336,900	16,845	67,380	197,675	55,000
			마이너스옵션	314,122	15,706	62,824	180,592	55,000

055.00000	46B	4층	기본형	343,840	17,192	68,768	202,880	55,000	
			마이너스옵션	321,062	16,053	64,212	185,797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347,320	17,366	69,464	205,490	55,000	
			마이너스옵션	324,542	16,227	64,908	188,407	55,000	
	55A	5층~ 최상층	기본형	347,600	17,380	69,520	205,700	55,000	
			마이너스옵션	324,804	16,240	64,961	188,603	55,000	
		1층	기본형	387,570	19,379	77,514	235,677	55,000	
			마이너스옵션	361,454	18,073	72,291	216,090	55,000	
		2층	기본형	391,690	19,585	78,338	238,767	55,000	
			마이너스옵션	365,574	18,279	73,115	219,180	55,000	
		3층	기본형	399,940	19,997	79,988	244,955	55,000	
			마이너스옵션	373,824	18,691	74,765	225,368	55,000	
		4층	기본형	408,180	20,409	81,636	251,135	55,000	
			마이너스옵션	382,064	19,103	76,413	231,548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12,310	20,616	82,462	254,232	55,000	
			마이너스옵션	386,194	19,310	77,239	234,645	55,000	
		55B	1층	기본형	385,570	19,279	77,114	234,177	55,000
				마이너스옵션	359,589	17,979	71,918	214,692	55,000
			2층	기본형	389,680	19,484	77,936	237,260	55,000
				마이너스옵션	363,699	18,185	72,740	217,774	55,000
3층	기본형		397,880	19,894	79,576	243,410	55,000		
	마이너스옵션		371,899	18,595	74,380	223,924	55,000		
4층	기본형		406,080	20,304	81,216	249,560	55,000		
	마이너스옵션		380,099	19,005	76,020	230,074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10,190	20,510	82,038	252,642	55,000			
	마이너스옵션	384,209	19,210	76,842	233,157	55,000			
55C	1층	기본형	387,400	19,370	77,480	235,550	55,000		
		마이너스옵션	361,580	18,079	72,316	216,185	55,000		
	2층	기본형	391,520	19,576	78,304	238,640	55,000		
		마이너스옵션	365,700	18,285	73,140	219,275	55,000		
	3층	기본형	399,760	19,988	79,952	244,820	55,000		
		마이너스옵션	373,940	18,697	74,788	225,455	55,000		
	4층	기본형	408,000	20,400	81,600	251,000	55,000		
		마이너스옵션	382,180	19,109	76,436	231,635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12,130	20,607	82,426	254,097	55,000			
	마이너스옵션	386,310	19,316	77,262	234,732	55,000			
55D	1층	기본형	389,890	19,495	77,978	237,417	55,000		
		마이너스옵션	363,618	18,181	72,724	217,713	55,000		
	2층	기본형	394,040	19,702	78,808	240,530	55,000		
		마이너스옵션	367,768	18,388	73,554	220,826	55,000		
	3층	기본형	402,330	20,117	80,466	246,747	55,000		
		마이너스옵션	376,058	18,803	75,212	227,043	55,000		
	4층	기본형	410,630	20,532	82,126	252,972	55,000		
		마이너스옵션	384,358	19,218	76,872	233,268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14,780	20,739	82,956	256,085	55,000			
	마이너스옵션	388,508	19,425	77,702	236,381	55,000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10%	10%	10%		
					계약시	(‘26.05.27)	(‘26.11.27)	입주시	
046.00000	46A	1층	기본형	326,480	32,648	32,648	32,648	173,536	55,000
			마이너스옵션	303,702	30,370	30,370	30,370	157,592	55,000
		2층	기본형	329,950	32,995	32,995	32,995	175,965	55,000
			마이너스옵션	307,172	30,717	30,717	30,717	160,021	55,000
		3층	기본형	336,900	33,690	33,690	33,690	180,830	55,000
	마이너스옵션		314,122	31,412	31,412	31,412	164,886	55,000	
	46B	4층	기본형	343,840	34,384	34,384	34,384	185,688	55,000
			마이너스옵션	321,062	32,106	32,106	32,106	169,744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347,320	34,732	34,732	34,732	188,124	55,000
			마이너스옵션	324,542	32,454	32,454	32,454	172,180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347,600	34,760	34,760	34,760	188,320	55,000	
마이너스옵션	324,804	32,480	32,480	32,480	172,364	55,000			
055.00000	55A	1층	기본형	387,570	38,757	38,757	38,757	216,299	55,000
			마이너스옵션	361,454	36,145	36,145	36,145	198,019	55,000
		2층	기본형	391,690	39,169	39,169	39,169	219,183	55,000
			마이너스옵션	365,574	36,557	36,557	36,557	200,903	55,000
		3층	기본형	399,940	39,994	39,994	39,994	224,958	55,000
	마이너스옵션		373,824	37,382	37,382	37,382	206,678	55,000	
	4층	기본형	408,180	40,818	40,818	40,818	230,726	55,000	
		마이너스옵션	382,064	38,206	38,206	38,206	212,446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12,310	41,231	41,231	41,231	233,617	55,000	
		마이너스옵션	386,194	38,619	38,619	38,619	215,337	55,000	
	55B	1층	기본형	385,570	38,557	38,557	38,557	214,899	55,000
			마이너스옵션	359,589	35,959	35,959	35,959	196,712	55,000
		2층	기본형	389,680	38,968	38,968	38,968	217,776	55,000
			마이너스옵션	363,699	36,370	36,370	36,370	199,589	55,000
		3층	기본형	397,880	39,788	39,788	39,788	223,516	55,000
마이너스옵션			371,899	37,190	37,190	37,190	205,329	55,000	
4층		기본형	406,080	40,608	40,608	40,608	229,256	55,000	
		마이너스옵션	380,099	38,010	38,010	38,010	211,069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10,190	41,019	41,019	41,019	232,133	55,000	
		마이너스옵션	384,209	38,421	38,421	38,421	213,946	55,000	

55C	1층	기본형	387,400	38,740	38,740	38,740	216,180	55,000
		마이너스옵션	361,580	36,158	36,158	36,158	198,106	55,000
	2층	기본형	391,520	39,152	39,152	39,152	219,064	55,000
		마이너스옵션	365,700	36,570	36,570	36,570	200,990	55,000
	3층	기본형	399,760	39,976	39,976	39,976	224,832	55,000
		마이너스옵션	373,940	37,394	37,394	37,394	206,758	55,000
	4층	기본형	408,000	40,800	40,800	40,800	230,600	55,000
		마이너스옵션	382,180	38,218	38,218	38,218	212,526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12,130	41,213	41,213	41,213	233,491	55,000
		마이너스옵션	386,310	38,631	38,631	38,631	215,417	55,000
55D	1층	기본형	389,890	38,989	38,989	38,989	217,923	55,000
		마이너스옵션	363,618	36,362	36,362	36,362	199,532	55,000
	2층	기본형	394,040	39,404	39,404	39,404	220,828	55,000
		마이너스옵션	367,768	36,777	36,777	36,777	202,437	55,000
	3층	기본형	402,330	40,233	40,233	40,233	226,631	55,000
		마이너스옵션	376,058	37,606	37,606	37,606	208,240	55,000
	4층	기본형	410,630	41,063	41,063	41,063	232,441	55,000
		마이너스옵션	384,358	38,436	38,436	38,436	214,050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14,780	41,478	41,478	41,478	235,346	55,000
		마이너스옵션	388,508	38,851	38,851	38,851	216,955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용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며,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용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육실문틀 하부 쉘,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가감), PL창호, 실외기실 그릴창
② 바닥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스피커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동림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룩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구(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싱크수전 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욕실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및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비상등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자동할래 건조대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소방감지기, 하향식 피난구 등 소방 관련 시설, 계량기류, 외부발코니 난간대, 에어컨 냉매배관(기본형 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 동작감지기, 자석감지기, 생활정보기, 스피커, 세대단자함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안내
- 계약 체결 시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강확장형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 불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 : 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도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경조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 시 소방시설법에 의거하여 소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공간선택(무상) 안내

- \* 등·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등·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025.04.03. ~ 04.04.)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태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펌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 \* 46B, 55D 타입의 경우 공간선택이 불가합니다.

주택형	타입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046.00000	46A	거실/침실2 분리	거실/침실2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A 중 1가지 선택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055.00000	55A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A 중 1가지 선택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55B			
	55C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불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쿨탑 등

- \* 등·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등·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025.04.03. ~ 04.04.)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펌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납부 조건]

주택형	구분	선택품목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단위:천원)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5.11.27)	잔금 (입주시)		
46A	가구	1-1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1,078	54	216	808	1-1, 1-2, 1-3, 1-4, 1-5, 1-6 중 하나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2 [침실1] 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627	31	125	471		
		1-3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3,861	193	772	2,896		
		1-4 [침실1] 불박이장+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3,410	171	682	2,557		
		1-5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4,279	214	856	3,209		
		1-6 [침실1] 불박이장+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3,828	191	766	2,871		
	주방가구	2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87	348	1,303	공간확장형 A 선택시 선택불가	
		3-1 냉장고장+키큰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1,067	53	213	801	3-1, 3-2 중 택1	
		3-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374	19	75	280			
		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5-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2,508	125	502	1,881	5-1, 5-2 중 택1	
		5-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3,080	154	616	2,310			
	주방가전	6-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쿡탑(3구)	620	31	124	465	6-1, 6-2 중 택1	
		6-2 인덕션 3구		580	29	116	435		
	거실현관	7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98	10	40	148	8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8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781	39	156	586		
	조명	9-1 조명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엠티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거실, 침실1, 침실2)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433	122	487	1,824	9-1, 9-2 중 택1	
		9-2 조명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 등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엠티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침실1, 침실2) * 거실 다운라이트 등 8EA는 디밍제어안 가능, 색온도 조절 불가		3,058	153	612	2,293		
	화장실	10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29	116	435	11 비데일체형 양변기	
		11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기타	12 기능성 툴캐트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13 현관 중문(3연동)	
		13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69	275	1,031		
	시스템 에어컨	14-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 매립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700	185	740	2,775	14-1, 14-2 중 택1 * 공익확장형 A 선택시 14-2 로 설치	
		14-2 거실+침실1+침실2(실내기 3대)		5,160	258	1,032	3,870		
		15-1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1,232	62	246		924
		15-2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4,015	201	803		3,011
	46B	가구	15-3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4,433	222	887	3,324	15-1, 15-2, 15-3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6-1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87	348	1,303	
16-2 [침실2/팬트리 통합]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198	10	40	148		
주방		3-1 냉장고장+키큰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1,067	53	213	801	3-1, 3-2 중 택1	
		3-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374	19	75	280			
		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주방가전	5-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2,211	111	442	1,658	5-1, 5-2 중 택1		
	5-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2,783	139	557	2,087				
주방가전	6-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쿡탑(3구)	620	31	124	465	6-1, 6-2 중 택1		
	6-2 인덕션 3구		580	29	116	435			
거실현관	7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54	8	31	115	8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8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2,079	104	416	1,559			
조명	9-1 조명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엠티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거실, 침실1, 침실2)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320	116	464	1,740	9-1, 9-2 중 택1		
	9-2 조명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 등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엠티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침실1, 침실2) * 거실 다운라이트 등 8EA는 디밍제어안 가능, 색온도 조절 불가		3,106	155	621	2,330			
화장실	10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29	116	435	11 비데일체형 양변기		
	11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기타	12 기능성 툴캐트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13 현관 중문(3연동)		
	13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69	275	1,031			
시스템 에어컨	14-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 매립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700	185	740	2,775	14-1, 14-2, 14-3 중 택1 * 14-3은 14-2 선택시 가능		
	14-2 거실+침실1+침실2(실내기 3대)		5,160	258	1,032	3,870			
	15-1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1,232	62	246		924	
	15-2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4,015	201	803		3,011	

55A	가구	11-1 [침실1] 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902	45	180	677	11-1, 11-2, 11-3, 11-4 중 하나만
		11-2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1,925	96	385	1,444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1-3 [침실1] 불박이장+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3,685	184	737	2,764	11-1, 11-3 선택시
		11-4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4,708	235	942	3,531	부부욕실 도어방향 변경
	주방	22-1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87	348	1,303	공간확장형 A 선택시 가능
		22-2 [침실2/알파룸 통합] 불박이장(통합형)	미설치	3,476	174	695	2,607	
		33-1 냉장고장+키큰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1,067	53	213	801	
		33-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김치냉장고장	374	19	75	280	
		4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55-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2,343	117	469	1,757	
		55-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2,915	146	583	2,186	
		66-1 아일랜드 식탁(MMA상판)	미설치	869	43	174	652	
	주방가전	77-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쿡탑(3구)	620	31	124	465	
		77-2 인덕션 3구		580	29	116	435	
	거실현관	88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98	10	40	148	
		99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1,628	81	326	1,221	
	조명	100-1 조명 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673	134	535	2,004	
		100-2 조명 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등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침실1, 침실2, 알파룸) * 거실 다운라이트등 8EA는 디밍제어만 가능, 색온도 조절 불가		3,159	158	632	2,369	
	화장실	111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29	116	435	[공용욕실]에 설치가능 *부부욕실 : 기본형 설치
		112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부부욕실]에 설치가능 *공용욕실 : 기본형 설치	
	기타	113 기능성 톱카펫	강화합판미루	선택시 무상 제공				
		114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69	275	1,031	
	시스템 에어컨	115 현관 수납장+팬트리	현관창고	913	46	183	684	선택시 팬트리 입구 및 크기 변경
		116-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 매립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830	192	766	2,872	
116-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실내기 4대)		6,630		332	1,326	4,972		
116-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실내기 3대)		5,530		277	1,106	4,147		
						116-1, 116-2, 116-3 중 택1 * 116-3은 공간확장형 A 선택시 가능		
55B	가구	11-1 [침실1] 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814	41	163	610	11-1, 11-2, 11-3, 11-4 중 하나만
		11-2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1,826	91	365	1,370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1-3 [침실1] 불박이장+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3,597	180	719	2,698	11-1, 11-3 선택시
		11-4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4,609	230	922	3,457	부부욕실 도어방향 변경
	주방	22-1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87	348	1,303	공간확장형 A 선택시 가능
		22-2 [침실2/알파룸 통합] 불박이장(통합형)	미설치	3,476	174	695	2,607	
		33-1 냉장고장+키큰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1,067	53	213	801	
		33-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김치냉장고장	374	19	75	280	
		4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55-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2,926	146	585	2,195	
		55-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3,509	175	702	2,632	
		66-1 아일랜드 식탁(MMA상판)	미설치	869	43	174	652	
	주방가전	77-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쿡탑(3구)	620	31	124	465	
		77-2 인덕션 3구		580	29	116	435	
	거실현관	88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98	10	40	148	
		99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2,112	106	422	1,584	
	조명	100-1 조명 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614	131	523	1,960	
		100-2 조명 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등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침실1, 침실2, 알파룸) * 거실 다운라이트등 8EA는 디밍제어만 가능, 색온도 조절 불가		3,277	164	655	2,458	
	화장실	111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29	116	435	[공용욕실]에 설치가능 *부부욕실 : 기본형 설치
		112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부부욕실]에 설치가능 *공용욕실 : 기본형 설치	
	기타	113 기능성 톱카펫	강화합판미루	선택시 무상 제공				
		114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69	275	1,031	
	시스템 에어컨	115 현관 수납장+팬트리	현관창고	913	46	183	684	선택시 팬트리 입구 및 크기 변경
		116-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 매립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830	192	766	2,872	
116-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실내기 4대)		6,630		332	1,326	4,972		
116-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실내기 3대)		5,530		277	1,106	4,147		
						116-1, 116-2, 116-3 중 택1 * 116-3은 공간확장형 A 선택시 가능		
55C	가구	11-1 [침실1] 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990	50	198	742	11-1, 11-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11-2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2,024	101	405	1,518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22-1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87	348	1,303	공간확장형 A 선택시 가능
		22-2 [침실2/알파룸 통합] 불박이장(통합형)	미설치	3,476	174	695	2,607	
	33-1 냉장고장+키큰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1,067	53	213	801		
	33-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김치냉장고장	374	19	75	280		
	주방	4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55-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2,321	116	464	1,741	
		55-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2,893	145	579	2,169	
		66-1 아일랜드 식탁(MMA상판)	미설치	869	43	174	652	
		66-2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스톤상판)	미설치	1,111	56	222	833	
		주방가전	77-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쿡탑(3구)	620	31	124	465
			77-2 인덕션 3구		580	29	116	435
		거실현관	88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98	10	40	148
	99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1,562	78	312	1,172	
	조명	100-1 조명 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612	131	522	1,959	
		100-2 조명 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등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침실1, 침실2, 알파룸) * 거실 다운라이트등 8EA는 디밍제어만 가능, 색온도 조절 불가		3,197	160	639	2,398	
	화장실	111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29	116	435	[공용욕실]에 설치가능 *부부욕실 : 기본형 설치
		112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부부욕실]에 설치가능 *공용욕실 : 기본형 설치	
	기타	113 기능성 톱카펫	강화합판미루	선택시 무상 제공				
		114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69	275	1,031	



구분	구분	선택품목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단위:천원)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20.05.27)	중도금 2차 (20.11.27)	잔금 (입주시)	
55D	시스템 에어컨	16-1 현관 수납장+팬트리	현관창고	990	50	198	742	선택시 팬트리 입구 및 코기 변경	
		16-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 매립배관안 설치 (거실+침실1)	3,830	192	766	2,872	16-1, 16-2, 16-3 중 택1 * 16-3은 공간확장형 선택시 가능	
	가구	16-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실내기 4대)	미설치	6,630	332	1,326	4,972		
		16-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실내기 3대)	미설치	5,530	277	1,106	4,147		
		16-1 [침실1] 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957	48	191	718	16-1, 16-2, 16-3, 16-4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6-2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1,980	99	396	1,485	16-1, 16-3 선택시 부부욕실 도어방향 변경	
		16-3 [침실1] 불박이장+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3,740	187	748	2,805		
		16-4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4,763	238	953	3,572		
	주방	2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87	348	1,303		
		16-1 냉장고장+키르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1,067	53	213	801	16-1, 16-2 중 택1	
		16-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374	19	75	280		
		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16-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2,288	114	458	1,716	16-1, 16-2 중 택1	
		16-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2,849	142	570	2,137	16-2는 16-2 선택시 가능	
	주방가전	16-1 아일랜드 식탁(MMA상판)	미설치	869	43	174	652	16-1, 16-2 중 택1	
		16-2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스톤상판)	미설치	1,111	56	222	833	고정식(이동불가)	
		7-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쿡탑(3구)	620	31	124	465	7-1, 7-2 중 택1	
		7-2 인덕션 3구	가스쿡탑(3구)	580	29	116	435		
	거실현관	8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98	10	40	148		
		9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2,288	114	458	1,716		
조명	10-1 조명 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색온도 조절(거실, 침실1, 침실2)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580	129	516	1,935	10-1, 10-2 중 택1		
	10-2 조명 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 등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색온도 조절(침실1, 침실2) * 거실 다운라이트 등 8EA는 디밍제어만 가능, 색온도 조절 불가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3,241	162	648	2,431			
화장실	11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29	116	435	[공용욕실]에 설치가능 *부부욕실 : 기본형 설치 [부부욕실]에 설치가능 *공용욕실 : 기본형 설치		
	12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기타	13 기능성 톱카펫	강화합판미루	선택시 무상 제공						
	14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69	275	1,031			
시스템 에어컨	16-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 매립배관안 설치 (거실+침실1)	4,070	204	814	3,052	16-1, 16-2 중 택1		
	16-2 거실+침실1+침실2(실내기 3대)	미설치	5,500	275	1,100	4,125			

[사전청약당첨자 외 대상 추가선택품목 납부 조건]

주택형	구분	선택품목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단위:천원)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20.05.27)	중도금 2차 (20.11.27)	잔금 (입주시)	
46A	가구	16-1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1,078	108	108	108	754	
		16-2 [침실1] 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627	63	63	63	438	16-1, 16-2, 16-3, 16-4, 16-5, 16-6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6-3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3,861	386	386	386	2,703	16-2, 16-4, 16-6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팬트리 삭제
		16-4 [침실1] 불박이장+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3,410	341	341	341	2,387	
		16-5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4,279	428	428	428	2,995	
		16-6 [침실1] 불박이장+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3,828	383	383	383	2,679	
	주방가전	2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174	174	174	1,216	공간확장형 선택시 선택불가
		16-1 냉장고장+키르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1,067	107	107	107	746	16-1, 16-2 중 택1
		16-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374	37	37	37	263	
		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16-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2,508	251	251	251	1,755	16-1, 16-2 중 택1
		16-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3,080	308	308	308	2,156	16-2는 16-2 선택시 가능
	주방가전	16-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쿡탑(3구)	620	62	62	62	434	16-1, 16-2 중 택1
		16-2 인덕션 3구	가스쿡탑(3구)	580	58	58	58	406	
	거실현관	7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98	20	20	20	138	
		9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781	78	78	78	547	
	조명	10-1 조명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색온도 조절(거실, 침실1, 침실2)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433	243	243	243	1,704	10-1, 10-2 중 택1
		10-2 조명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 등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색온도 조절(침실1, 침실2) * 거실 다운라이트 등 8EA는 디밍제어만 가능, 색온도 조절 불가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3,058	306	306	306	2,140	
	화장실	11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12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기타	13 기능성 톱카펫	강화합판미루	선택시 무상 제공						
	14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138	138	138	961		
시스템 에어컨	16-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 매립배관안 설치 (거실+침실1)	3,700	370	370	370	2,590	16-1, 16-2 중 택1	
	16-2 거실+침실1+침실2(실내기 3대)	미설치	5,160	516	516	516	3,612	* 공간확장형 선택시 16-2 로 설치	
가구	16-1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1,232	123	123	123	863	16-1, 16-2, 16-3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6-2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4,015	402	402	402	2,809		
	16-3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4,433	443	443	443	3,104		
	2-1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174	174	174	1,216	16-1, 16-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16-2 선택시 팬트리 삭제	
	2-2 [침실2/팬트리 통합]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198	20	20	20	138		
	16-1 냉장고장+키르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1,067	107	107	107	746	16-1, 16-2 중 택1	
주방	16-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374	37	37	37	263		
	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16-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2,211	221	221	221	1,548	16-1, 16-2 중 택1	
	16-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2,783	278	278	278	1,949	16-2는 16-2 선택시 가능	
	16-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쿡탑(3구)	620	62	62	62	434	16-1, 16-2 중 택1	
	16-2 인덕션 3구	가스쿡탑(3구)	580	58	58	58	406		
거실현관	7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54	15	15	15	109		
	9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2,079	208	208	208	1,455		
조명	10-1 조명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색온도 조절(거실, 침실1, 침실2)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320	232	232	232	1,624	10-1, 10-2 중 택1	
	10-2 조명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 등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현관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엠티등(거실, 침실1)+디밍·색온도 조절(침실1, 침실2) * 거실 다운라이트 등 8EA는 디밍제어만 가능, 색온도 조절 불가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3,106	311	311	311	2,173		
화장실	11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12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선택시 무상 제공					구분	
				1,375	138	138	138	961		
55A	기타	12 기능성 톱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16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138	138	138	961		
	시스템 에어컨	14-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미설치	3,700	370	370	370	2,590		
		14-2 거실+침실1+침실2(실내기 3대)	냉매 매립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5,160	516	516	516	3,612	10-1, 10-2, 10-3 중 택1 * 10-3은 10-2 선택시 가능	
		14-3 거실+침실1+침실2/팬트리 통합(실내기 3대)	미설치	5,160	516	516	516	3,612		
	가구	11-1 [침실1] 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902	90	90	90	632	11-1, 11-2, 11-3, 11-4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1-2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1,925	193	193	193	1,346	11-1, 11-3 선택시	
		11-3 [침실1] 불박이장+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3,685	369	369	369	2,578	부부욕실 도어방향 변경	
		11-4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4,708	471	471	471	3,295		
		12-1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174	174	174	1,216		
		12-2 [침실2/알파룸 통합] 불박이장(통합형)	미설치	3,476	348	348	348	2,432	공간확장형A 선택시 가능	
		13-1 냉장고장+키친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1,067	107	107	107	746	13-1, 13-2 중 택1	
13-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김치냉장고장	374	37	37	37	263			
주방	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5-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2,343	234	234	234	1,641	5-1, 5-2 중 택1		
	5-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2,915	292	292	292	2,039	5-2 는 5-2 선택시 가능		
	6-1 아일랜드 식탁(MMA상판)	미설치	869	87	87	87	608	6-1, 6-2 중 택1		
	6-2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스톤상판)	미설치	1,111	111	111	111	778	고정식(이동불가)		
	7-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룩탑(3구)	620	62	62	62	434	7-1, 7-2 중 택1		
	7-2 인덕션 3구	미설치	580	58	58	58	406			
	8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98	20	20	20	138			
주방가전	9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1,628	163	163	163	1,139			
	10-1 조명 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673	267	267	267	1,872	10-1, 10-2 중 택1		
	10-2 조명 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등 8EA)		3,159	316	316	316	2,211			
	10-3 조명 특화 PKG3(거실 중앙 직부등)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614	261	261	261	1,831	10-1, 10-2 중 택1		
	10-4 조명 특화 PKG4(거실 다운라이트등 8EA)		3,277	328	328	328	2,293			
	화장실	11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공용욕실]에 설치가능 *부부욕실 : 기본형 설치	
		12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부부욕실]에 설치가능 *공용욕실 : 기본형 설치	
	기타	18 기능성 톱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16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138	138	138	961			
시스템 에어컨	14 현관 수납장+팬트리	현관상고	913	91	91	91	640	선택시 팬트리 입구 및 크기 변경		
	14-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미설치	3,830	383	383	383	2,681	10-1, 10-2, 10-3 중 택1 * 10-3은 공간확장형A 선택시 가능		
	14-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실내기 4대)	냉매 매립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6,630	663	663	663	4,641			
55B	가구	11-1 [침실1] 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814	81	81	81	571	11-1, 11-2, 11-3, 11-4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1-2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1,826	183	183	183	1,277	11-1, 11-3 선택시	
		11-3 [침실1] 불박이장+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3,597	360	360	360	2,517	부부욕실 도어방향 변경	
	주방	11-4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4,609	461	461	461	3,226		
		12-1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174	174	174	1,216		
		12-2 [침실2/알파룸 통합] 불박이장(통합형)	미설치	3,476	348	348	348	2,432	공간확장형A 선택시 가능	
		13-1 냉장고장+키친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1,067	107	107	107	746	13-1, 13-2 중 택1	
		13-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김치냉장고장	374	37	37	37	263		
		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5-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2,926	293	293	293	2,047	5-1, 5-2 중 택1	
		5-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3,509	351	351	351	2,456	5-2 는 5-2 선택시 가능	
	주방가전	6-1 아일랜드 식탁(MMA상판)	미설치	869	87	87	87	608	6-1, 6-2 중 택1	
6-2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스톤상판)		미설치	1,111	111	111	111	778	고정식(이동불가)		
7-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룩탑(3구)	620	62	62	62	434	7-1, 7-2 중 택1		
7-2 인덕션 3구		미설치	580	58	58	58	406			
화장실		8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98	20	20	20	138		
		9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2,112	211	211	211	1,479		
55C		기타	12 기능성 톱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16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138	138	138	961	
	시스템 에어컨	14-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미설치	3,830	383	383	383	2,681	10-1, 10-2, 10-3 중 택1 * 10-3은 공간확장형A 선택시 가능	
		14-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실내기 4대)	냉매 매립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6,630	663	663	663	4,641		
		14-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실내기 3대)	미설치	5,530	553	553	553	3,871		
	가구	11-1 [침실1] 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990	99	99	99	693	11-1, 11-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1-2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2,024	202	202	202	1,418	11-1, 11-3 선택시	
		12-1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174	174	174	1,216		
12-2 [침실2/알파룸 통합] 불박이장(통합형)		미설치	3,476	348	348	348	2,432	공간확장형A 선택시 가능		
13-1 냉장고장+키친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1,067	107	107	107	746	13-1, 13-2 중 택1		
13-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김치냉장고장	374	37	37	37	263			
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5-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2,321	232	232	232	1,625	5-1, 5-2 중 택1		
5-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2,893	289	289	289	2,026	5-2 는 5-2 선택시 가능			
주방	6-1 아일랜드 식탁(MMA상판)	미설치	869	87	87	87	608	6-1, 6-2 중 택1		
	6-2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스톤상판)	미설치	1,111	111	111	111	778	고정식(이동불가)		
	7-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룩탑(3구)	620	62	62	62	434	7-1, 7-2 중 택1		
	7-2 인덕션 3구	미설치	580	58	58	58	406			
	화장실	8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98	20	20	20	138		
		9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1,562	156	156	156	1,094		
	조명	10-1 조명 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612	261	261	261	1,829	10-1, 10-2 중 택1	
		10-2 조명 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등 8EA)		3,197	320	320	320	2,237		

55D	화장실	11 욕실 다기능편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공용욕실]에 설치가능 *부부욕실 : 기본형 설치
		12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부부욕실]에 설치가능 *공용욕실 : 기본형 설치
	기타	18 기능성 톱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14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138	138	138	961	
	시스템 에어컨	16 현관 수납장+팬트리	현관창고	990	99	99	99	693	선택시 팬트리 입구 및 크기 변경
		16-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 매립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830	383	383	383	2,681	16-1, 16-2, 16-3 중 택1 * 16-3은 공간확장형A 선택시 가능
		16-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실내기 4대)		6,630	663	663	663	4,641	
	16-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실내기 3대)	5,530		553	553	553	3,871		
	가구	11-1 [침실1] 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957	96	96	96	669	11-1, 11-2, 11-3, 11-4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선택시 경량벽체 시공 11-1, 11-3 선택시 부부욕실 도어방향 변경
		11-2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1,980	198	198	198	1,386	
		11-3 [침실1] 불박이장+대형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미설치	3,740	374	374	374	2,618	
		11-4 [침실1] 불박이장+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화장대(입식)	미설치	4,763	476	476	476	3,335	
	주방	2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1,738	174	174	174	1,216	
		3-1 냉장고장+키친장+가전소물장(김치냉장고장 삭제)	냉장고장,	1,067	107	107	107	746	3-1, 3-2 중 택1
		3-2 냉장고장+싱크대연장(김치냉장고장 삭제)	김치냉장고장	374	37	37	37	263	
		4 식기세척기장	여닫이장	선택시 무상 제공					하부장 미설치
		5-1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인조대리석(MMA),	2,288	229	229	229	1,601	5-1, 5-2 중 택1 5-2 는 5-2 선택시 가능
		5-2 엔지니어드스톤(연장형) 벽/상판+거위목 싱크수전+사각싱크볼	일반싱크볼+일반싱크수전	2,849	285	285	285	1,994	
	주방가전	6-1 아일랜드 식탁(MMA상판)	미설치	869	87	87	87	608	6-1, 6-2 중 택1 고정식(이동불가)
		6-2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스톤상판)	미설치	1,111	111	111	111	778	
거실현관	7-1 인덕션 2구+가스 1구	가스룩담(3구)	620	62	62	62	434	7-1, 7-2 중 택1	
	7-2 인덕션 3구		580	58	58	58	406		
조명	8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198	20	20	20	138		
	9 벽 특화PKG(거실+현관+복도 벽체 시트판넬+특화형 도어레버)	실크벽지	2,288	229	229	229	1,601		
화장실	10-1 조명 특화 PKG1(거실 중앙 직부등)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4면, 현관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엣지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거실, 침실1, 침실2)	거실 중앙 직부등 (디밍제어 가능)	2,580	258	258	258	1,806	10-1, 10-2 중 택1	
	10-2 조명 특화 PKG2(거실 다운라이트등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현관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 엣지등(거실, 침실1)+디밍 · 색온도 조절(침실1, 침실2) * 거실 다운라이트등 8EA는 디밍제어만 가능, 색온도 조절 불가		3,241	324	324	324	2,269		
화장실	11 욕실 다기능편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공용욕실]에 설치가능 *부부욕실 : 기본형 설치	
	12 비데일체형 양변기	원피스형 양변기+비데	선택시 무상 제공					[부부욕실]에 설치가능 *공용욕실 : 기본형 설치	
기타	18 기능성 톱카펫	강화합판마루	선택시 무상 제공						
	14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375	138	138	138	961		
시스템 에어컨	16-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 매립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4,070	407	407	407	2,849	16-1, 16-2 중 택1	
	16-2 거실+침실1+침실2(실내기 3대)		5,500	550	550	550	3,850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등·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등·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천원)		실별 구분 가격						
주택형	타입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팬트리	주방/식당
046.00000	46A	기본공사비(A)	60,880	19,155	10,061	16,023	-	15,640
		확장공사비(B)	66,765	19,422	12,054	16,412	-	18,877
		계약자부담액(B-A)	5,885	266	1,992	389	-	3,237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002	226	1,693	331	-	2,751
	46B	기본공사비(A)	63,226	21,897	793	14,217	6,049	20,270
		확장공사비(B)	69,073	22,061	2,426	14,350	6,601	23,636
		계약자부담액(B-A)	5,847	164	1,634	132	552	3,366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4,970	139	1,388	113	469	2,861
055.00000	55A	기본공사비(A)	73,449	19,306	11,061	15,221	9,469	18,392
		확장공사비(B)	80,131	19,572	13,059	14,918	10,688	21,895
		계약자부담액(B-A)	6,682	266	1,999	-303	1,218	3,503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680	226	1,699	-258	1,036	2,977
	55B	기본공사비(A)	72,853	21,059	793	17,354	10,945	22,703
		확장공사비(B)	79,411	21,080	2,487	16,885	12,026	26,933
		계약자부담액(B-A)	6,558	21	1,694	-469	1,082	4,23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574	18	1,440	-399	919	3,595
	55C	기본공사비(A)	73,616	19,942	9,631	15,710	9,824	18,510
		확장공사비(B)	80,243	20,195	11,611	15,397	11,035	22,006
		계약자부담액(B-A)	6,628	253	1,980	-313	1,212	3,496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634	215	1,683	-266	1,030	2,972
55D	기본공사비(A)	78,593	33,043	793	17,275	-	27,482	
	확장공사비(B)	85,245	34,505	2,426	17,466	-	30,848	
	계약자부담액(B-A)	6,652	1,463	1,634	191	-	3,366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655	1,243	1,388	162	-	2,861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액 계'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액 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상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6.11.27)	잔금 (입주시)
046.0000O	46A	기본형	5,885	500	2,000	3,385
		마이너스옵션	5,002	500	2,000	2,502
	46B	기본형	5,847	500	2,000	3,347
		마이너스옵션	4,970	500	2,000	2,470
055.0000O	55A	기본형	6,682	500	2,000	4,182
		마이너스옵션	5,680	500	2,000	3,180
	55B	기본형	6,558	500	2,000	4,058
		마이너스옵션	5,574	500	2,000	3,074
	55C	기본형	6,628	500	2,000	4,128
		마이너스옵션	5,634	500	2,000	3,134
	55D	기본형	6,652	500	2,000	4,152
		마이너스옵션	5,655	500	2,000	3,155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26.05.27)	중도금 2차 ('26.11.27)	잔금 (입주시)
046.0000O	46A	기본형	5,885	1,000	1,000	1,000	2,885
		마이너스옵션	5,002	1,000	1,000	1,000	2,002
	46B	기본형	5,847	1,000	1,000	1,000	2,847
		마이너스옵션	4,970	1,000	1,000	1,000	1,970
055.0000O	55A	기본형	6,682	1,000	1,000	1,000	3,682
		마이너스옵션	5,680	1,000	1,000	1,000	2,680
	55B	기본형	6,558	1,000	1,000	1,000	3,558
		마이너스옵션	5,574	1,000	1,000	1,000	2,574
	55C	기본형	6,628	1,000	1,000	1,000	3,628
		마이너스옵션	5,634	1,000	1,000	1,000	2,634
	55D	기본형	6,652	1,000	1,000	1,000	3,652
		마이너스옵션	5,655	1,000	1,000	1,000	2,655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 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내 내용은 주택 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선택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공고일 현재 연 5%,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공고일 현재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을,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수원당수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 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액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1.15)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	30%	· 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3.11.15.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 거주 ('23.11.15.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5.15.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4.05.15.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선정 단계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 '23.11.15.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불가
- (2) '23.11.15.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선정 단계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수원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4.12.10)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회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당첨자 서류 접수 후 사회정보시스템에 조사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총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적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3> 총자산보유기준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보유판정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 (건물+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건 물</td> <td></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시설물</td> <td></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② 금융자산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62,00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가액</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li> <li>•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li> <li>•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③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④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⑤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li> <li>•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① 부동산(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97,000천원 이하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431,000천원 이하	<표3> 총자산보유기준 참고
② 금융자산			
③ 기타자산			
④ 자동차			
⑤ 부채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본청약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우선) 배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4,903,156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추첨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6,304,058	7,423,620	7,897,564	8,606,954	9,316,344	10,025,73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11,207,214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10%	14,709,469	17,321,781	18,427,649	20,082,892	21,738,135	23,393,37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20%	15,409,920	18,146,627	19,305,156	21,039,220	22,773,285	24,507,349



•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않음.
예비신혼부부	2페이지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의원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위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b>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b> 합산 소득 * 단, 세대의원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의원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초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형민)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축육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I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사전청약 당첨자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11.15.)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던 경우 **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 해당지역 전입일~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수원시 2년 이상, 경기도 2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4.11.15.)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11.25.(월) 10:00 ~ 11.26.(화)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분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분청약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유의사항

- **주택형 확인사항**
  - 사전청약시 **당첨된 블록과 주택형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타 주택형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분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	발코니 확장 여부
수원당수	A5	46	046.0000O	발코니 확장형
		55	055.0000O	발코니 확장형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11.25.(월) ~ 11.26.(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분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11.25.(월) ~ 11.26.(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분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분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2p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청약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출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동호수는 분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분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분청약 신청시 **당첨자발표일(2024.12.10.(화))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 **사전청약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시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24.12.17. ~ 12.22.)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분청약 당첨자 선정시 제출서류 :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참조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전매제한 사항**
  - 전매제한 관련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
- 기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3.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5년 11월 15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예비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4.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위 : 원]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5. 입주자 선정방법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우선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초과 11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가구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4,903,156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13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 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가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일반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9> 일반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3	• 태아(입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④ 0명	0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30세 미만인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없음(0점) 선택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해당없음	0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점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태아)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산 정 예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V. 신청서 확인사항"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 예시5 : 현재 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 예시6 : 현재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없으며 해당 가점은 0점.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 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합니다.



##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주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11.25.(월) ~ 11.26.(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4.11.25.(월) ~ 11.26.(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본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종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 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2024.11.25.(월) 10:00 ~ 11.26(화)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4.11.27(수) 10:00 ~ 11.28(목) 17:00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4.11.28(목)** 오후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통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통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사전청약당첨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4.11.25.(10:00) ~ 11.26.(17:00) , (본청약 신청자) 2024.11.27.(10:00) ~ 11.28.(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수월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수월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가입기간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신혼부부 특별공급용)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II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공공분양 등·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11:00
- 추첨 내용 ①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등·호수  
②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등·호수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연락처 : 031-250-8181)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당첨자)	
			전자	현장
'24.12.10(화) 14: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4.12.17(화)~12.22(일) 10:00~16:00	'25.4.3.(목) 10:00 ~4.4.(금) 16:00	전자	'25.4.8.(화)~4.9(수) 10:00~16:00
	현장		'25.4.10.(목)~4.11(금) 10:00~16:00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첨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 청약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4.12.17.~12.22)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절차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사전청약공고일(2021.10.15.)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선택	대상자	• 청약 시 최후순위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b>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b>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li> <li>※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li> <li>※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li> </ul>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일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li> </ul>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li>•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ul>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li> <li>•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li> <li>•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li> <li>•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③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li>*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총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li> <li>*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li> </ul>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li> </ul>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li> </ul>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li> </ul>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li> <li>•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li> <li>•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으려는 경우</li> <li>•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li> <li>•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li> <li>※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li> </ul>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li> </ul>
	선택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li> </ul>
⑦ 재직증명서	선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 <li>•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 </ul>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선택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li> <li>•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li> <li>•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으려는 경우,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li> <li>※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li> </ul>
	선택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어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li> <li>※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포함</li> </ul>
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li> </ul>
⑩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어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li> <li>※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포함</li> </ul>
⑪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선택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시 최하중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li> </ul>
⑫ 한부모가족증명서	선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li> </ul>
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 시 개명전·후 모두발급)</li> </ul>
⑭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li> </ul>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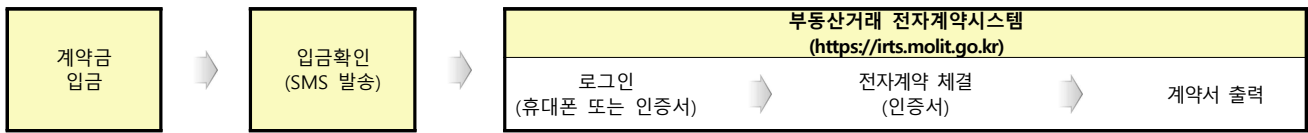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현상수납 불가) * 주택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러드려요-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도장(인감도장외에도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마감시간(16:00)까지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향후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보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 계약금 포함)을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 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자후불제 대출안내(중도금 대출 협약체결에 따라 대출이 실행 될 경우 이자 납부 방법 안내입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계약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자는 공사가 대납되되, 공사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입주자가 입주 지정기간 중 입주 시 우리 공사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대납 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중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미납금액에 연체이자(현행 8.5%, 변동 가능)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원할 시, 주택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정 등 세부 계획은 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연행 8.5%, 변동 가능)이 가산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 시 발생하는 제부담금(인지대 및 주택보증수수료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이 때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동시에 수용받을 수 없습니다.
-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용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 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금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적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을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정 세면기		거실	휠패드 높이조정, 아간 센서등	
			기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5.04.10.~04.11)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4.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65호, 2023.06.30)로 승인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84호, 2023.12.18)로 승인된 "수원당수 지구계획변경(4차)에 따라 조성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및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동될 소지가 있음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30호, 2023.06.26.)로 승인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본지구 서측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하여 개발예정임
- 지구 일부가 군항공기의 운항경로에 포함되어 항공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지구 주변 여건(고속도로 2개소 등)으로 도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북동측에 공급처리시설(변전소)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기 바람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 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일부분양·공공분양·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 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설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가로등, 녹지,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지구 동남측 반경 3km내 수원시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이 준공예정임('24년말)

###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수원당수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는 한전 전력기기, 가로등, 교통신호등 등 노상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인접 도시 계획 도로상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가로등, CCTV, 소화전 등),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2층 2.3m 지하1층 2.7m임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안전 및 사업변경에 따라 브릿지 디자인이 바뀔 수 있으며, 통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주출입구에 인접한 1층과 저층부 세대에서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총 70대(급속충전기 9대, 완속충전기 61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 불가함)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및 회전시 지하주차장 기동 및 옹벽 간섭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경사로 등의 통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어 있고 환풍 상부 지상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먼지, 매연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환기탑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단지 내 연결승수관 주변 마감(석재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세대에 시야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내 기반시설이므로 위치 이동 및 크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단지모형 및 팜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열·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류 가동 시 세대별로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와 맨홀이 설치되며, 일부 인접 동 및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 등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대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 구조물과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자원보관소가 일부 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며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기계실·펌프실 및 저수조실은 507동, 508동 인근 지하에 계획 및 설치됨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매연 등 발생할 수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허용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 차량은 주차가 불가하며,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충전시설 구역은 '충전구역' 표시됨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와 맨홀이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동 및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단,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11동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펌프 포함), 단지 주·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인접한 동(506동, 507동, 509동, 510동, 상가 등) 및 인근 세대는 소음(차량소음, 출차주의 경보음등), 자동차 전조등 및 야간 조명효과(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등)에 의한 눈부심과 현상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06동, 507동 인근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펌프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상부 환기구(D·A) 설치 위치에 따라 인근 저층세대에 시야차폐가 발생할 수 있고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열풍 및 매연이 일부 세대와 보행자 통로주변으로 전달되어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해제, 해지, 하자보수 등 민원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고)

- 단지 내 출입구에 디지털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신속한 주차유도와 주차가능공간 및 차량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한 AI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임
- 단지 내 각 동 1층, 지하층 출입구에 얼굴인식이 가능한 공동현관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한 한 세대에 한해서 비접촉 얼굴인식 원패스(One-Pass)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미동역시 서비스 제공 불가)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차단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단지 출입구 차량 입차로 및 출차로 변경,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스마트우편함[무인택배시스템 통합형]은 각 동별 설치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에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태양광발전설비는 전체동 지붕층에 설치 예정이며, 태양광 모듈사양에 따라 동별 설치 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설비 및 태양광 모듈의 빛 산란에 따라 일부 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주거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태양광 설비 등 구조물(시설물)로 인해 강풍 및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511동 옥탑 지붕층 바닥에 지상파(디지털) 공청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서비스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고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설치위치 및 수량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 예정 위치 : 501동, 503동, 510동, 512동 옥상층(4개소) 및 510동, 512동 지하1층(2개소) 등)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보호 설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노출되어 시공됨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의 조경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수월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복합재, 방과후교실, 경로당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기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에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축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아트월부위는 경량벽체로 별도 보강 하여 경량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팸플릿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 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주택형의 발코니(세탁기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 등)는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소방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급기구가 각 동 외벽에 설치됨
-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용 유닛 및 덕트 등이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용 유닛과 덕트는 노출 시공됨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등 천장에 설치됨(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에는 배기 디퓨저만 설치)
- 세대 내 실내환기설비는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로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벽면과 바닥으로 에어컨 냉매배관 및 배수배관이 노출됨
-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비난방 공간이므로 겨울철에 창문개방, 에어컨 실외기 그릴 개방 등에 의한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함
-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으로 인해 주방상부장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쿡탑 추가선택품목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대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됨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구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싱크배수구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균등한 급수공급압력을 계획하고 있으나, 급수펌프 구획별 또는 단지 레벨차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배기(레인지후드)는 당해층 배기(세대 개별배기) 방식이 적용됨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인접해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침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벽에 설치되는 악세사리(조리기구 걸이대, 컵 선반 등)는 전기 콘센트 및 도시가스 밸브의 간섭으로 인해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 및 PIT층,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 등 현장 여건으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 별로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됨
- 욕실팬 작동 시 냄새 역류방지를 위한 전동댐퍼가 연동하여 작동하므로 댐퍼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세대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계절창고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의 가동으로 전기요금에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필로티가 있는 502, 503, 506, 507, 509, 510, 511, 512동의 저층부 필로티 직상부 세대(직하부 층이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포함)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음
- 완강기 설치세대 및 1층 세대를 제외한 세대 실외기실에는 아래 세대로 탈출 가능한 바닥설치형 피난사다리기가 시공될 예정이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부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물건을 적재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세대분전반(전기)은 세대 평형 및 타입별 거실통로 벽체, 알파룸 또는 침실도어 후면 벽체 중 한 곳에 매립 설치되고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신청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람
- 46A 타입의 세대분전반(전기)은 거실통로 벽체에 매립 설치되고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현관신발장 내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신발장 하부등은 현관센서등과 동시에 점·소등되며 제어방식은 변경 불가함
- 각 단위세대 타입별 거실구조에 따라 다른 규격의 거실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거실등 규격 변경은 불가하므로 청약신청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람 (46A(s) Type : 3등용(75W), 46B Type : 2등용(50W), 55A(s) Type : 3등용(75W), 55B(s) Type : 2등용(50W), 55C Type : 3등용(75W), 55D(s) Type : 3등용(75W))
- 기본세대의 침실등의 경우 직접조명(정면, 흰색)과 후배광 조명(뒷면, 노란색) 일체형 제품이며 분리 제어가 가능함
- 기본세대의 거실등 및 조명특화 PKG1,2의 거실등, 침실등 및 알파룸등의 경우 직접조명(정면, 흰색)과 후배광 조명(뒷면, 노란색) 일체형 제품이며 분리 제어가 불가함
- 조명 기본옵션(조명특화 PKG1,2 미선택) 선택시 거실등에 한해서 디밍조절만 가능합니다.(색온도 조절불가)
- 조명 유상옵션(조명특화 PKG1,2) 선택시 거실등, 침실등(침실1, 침실2), 알파룸등(55Type만)은 디밍 및 색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단, 조명특화 PKG2의 거실등(다운라이트 8EA)는 색온도 조절 불가)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사양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거실, 욕실, 주방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부분에 타일 나누기 줄눈이 간섭될 수 있음
- 세대내 동작감지기의 경우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장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 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됨(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 주방 전기콘센트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일반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전용용 콘센트만 설치됨
- 거실용 에어컨 전원은 실외기 및 냉매박스를 통해 매립 시공되어 별도의 전용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을 선택할 경우, 실외기용 전원을 공급하며 에어컨용 콘센트는 미설치되고 박스 플레이트로 마감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침실1에 실내기 전용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옵션 선택시 침실1에 실내기 전용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관련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선택품목)은 세대 내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음
- 통신 세대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전기 세대분전반과 스마트홈 생활정보기 설치 위치는 평형 및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
- 부부욕실 휴지걸이 상부에 설치되는 무선형 IOT비상호출버튼을 누를 경우 월패드, 관리실, 경비실에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설치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식탁 및 아일랜드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 및 아일랜드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는 방법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각 실 네트워크 스위치 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락), 대기전력 차단서비스(IoT콘센트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연동)를 제공함
- 스마트홈 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 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 등이 표현됨
-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소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와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하향식 피난구 및 환기유닛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벽부형 또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 발코니 동작감지기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단, 실외기실(대피공간)에는 벽부형 조명이 설치됨)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인테리어용 포인트 조명 및 가구 등에 부착된 디스플레이용 간접등 등 보조조명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에서는 설치되지 않음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관할 교육청
초등학교	초1	미정	미정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중1	수원제일중 신설대체 이전	2027.03월 개교 예정	

- 수원당수 A5블록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단지 북서측 당수초등학교이며, 향후 지구 내 설립요인 발생으로 초등학교가 신설될 경우 통학구역이 조정될 수 있음
- 중학교는 북부중학교 2구역(대평중, 명인중, 송원중, 율전중, 이목중, 정천중, 천천중), 북부중학교 3구역(율현중, 구운중, 서호중), 호매실중학교(상촌중, 칠보중, 호매실중, 능실중)이며 호매실중학교 내 2027.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수원제일중 신설대체 이전을 추진중임.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군(구)는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고등학교는 관내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수원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을 따름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는 조정(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통학구역·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인근학교 현황 및 학생 수 등을 감안 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야 함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어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키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 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종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함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탐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임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공동주택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 관련 등급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재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 환기 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 환경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법안전 콘텐츠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대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이버)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74,983,339			
		기간이자	3,925,132			
		필요적 경비	61,500			
		그 밖의 비용	4,451,524			
	계	83,421,495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1,635,685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67,949		
			석축공사	18,745		
			우·오수공사	414,159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2,076		
			도로포장공사	197,608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1,235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3,969,801		
			부대시설공사	109,647		
			계	6,436,905		
			공사비	건축	공동가설공사	1,587,994
					가시설물공사	3,284,446
	지정 및 기초공사	2,310,374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16,845,683				
	용접공사	-				
	조적공사	1,213,400				
	미장공사	-				
	단열공사	2,506,676				
	방수·방습공사	1,733,492				
	목공사	2,237,197				
	가구공사	1,028,310				
	금속공사	663,983				
	지붕 및 홀통공사	147,238				
	창호공사	4,188,355				
	유리공사	1,023,364				
	타일공사	1,554,039				
	돌공사	2,280,431				
	도장공사	1,540,172				
도배공사	627,127					
수장공사	783,780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1,078,862					
계	46,634,921					
공사비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719,661			
		급탕설비공사	622,687			
		오배수설비공사	6,155,431			
		위생기구설비공사	1,841,491			
		난방설비공사	2,298,230			
		가스설비공사	682,921			
		자동제어설비공사	-			
		특수설비공사	-			
		공조설비공사	233,226			
		계	12,553,646			
공사비	그 밖의 공중	전기설비공사	5,796,529			
		정보통신공사	2,592,583			
		소방설비공사	6,995,134			
		승강기공사	1,406,866			
계	16,791,113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3,032,866			
		이윤	5,434,569			
계	8,467,434					
간접비	간접비	설계비	1,578,047			
		감리비	617,497			
		일반분양시설 경비	381,630			
		분담금 및 부담금	278,037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800,031
	계	6,655,243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1,283,657
합계		192,244,415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출평균액)	가. ㈜써브감정평가법인	나. ㈜대상감정평가법인
84,867,403천원	84,767,205천원	84,967,600천원

9.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계	기간 이자	밀집박기 공사비	흙막이 공사비	기타 비용	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공동주택 성능등급 가산비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지하 주차장 증고증가 추가비용	사업승인 부가조건 가산비
									홀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 배관	초고속 통신	기계 환기 설비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안전 관리비	사전청약 소요비용		
금액	9,550,446	4,442,530	2,771,811	2,266,498	69,607	12,771,033	2,068,408	1,635,410	3,051,668	443,457	247,348	730,236	1,245,392	193,258	582,584	150,809	196,986	2,225,477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수원당수 A5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35-82-14276)	효성중공업 주식회사(578-87-00896) 주식회사 시티종합건설(409-81-21119)	-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마인앤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지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11.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LH 수원 주택전시관)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 위치안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운영기간 :
  - (전시관 관람) 2024.11.15.(금) ~ 2024.11.24.(일) ※ 주말(토·일요일) 운영
  - (서류접수기간) 2024.12.17.(화)~12.22(일) ※ 주말(토·일요일) 운영
  -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5.04.10.(목) ~ 2025.04.11(금)
- 운영시간 :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사이버 모델하우스 (PC · 모바일)**

■ 주소 : www.lhsd.co.kr

**분양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 031-250-8181 (10:00 ~ 17:00)